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73호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1. 10. 5.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73호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07호, 2020. 11. 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위해가 확인된 해외작업장의 시정조치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검사 부적합 축산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원료수급·물가조절 긴급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는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 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민원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전산화된 검체 인수·인계서를 활용

토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나. 부적합 동일사 동일 축산물 현장검사 결과 전량 부적합한 경우 다음 수입 5회 연속 검사토록 함(안 제16조제5항)

다. 위해가 확인된 축산물에 대해 해당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통보 내용, 자료 제출 기한 등 세부 시정 요청 절차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원료수급·물가조절 긴급수입 축산물에 대한 신속 통관지원 규정을 마련함(제20조제1항)

마. 기준·규격 신설·강화 관련 정밀검사 항목을 공개하여 정보 공개대상을 확대함(제20조제3항)

### 3. 의견제출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angz@korea.kr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2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부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에 따라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07호, 2020. 11. 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1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을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로, “시행규칙 제27조”를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로, “업무 수행을”을 “업무를 수행하여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이라 함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0 제4호마목을 말한다.  
제3조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를 “시행규칙 제27조”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입고사실 및 한글표시사항”을 “입고사실”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허가(등록·신고)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빙자료가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시행규칙”을 “지방청장은 시행규칙”으로, “따른”을  
“따라 현장검사를 하여야 하고, 현장검사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청장 또는 수입식품검사소장”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  
장”으로, “판단한다”를 “판단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검체의 송부는 검체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계 공무  
원등이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별지 제4호 「시료 인계·인수  
서」를 작성하여 송부”를 “검체를 해당 시험·검사 기관으로 운송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 공무원 등 또는 해당 시험  
·검사기관의 관계인이 운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통보받은 지방청장 또  
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고 후 2

일 이내에 조건부 신고수리된 해당 축산물의 입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고가 완료되기 이전에 적합 판정된 경우에는 입고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부적합 통보서를 수입신고인 등에게 발급하여야”를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따라 이행 되었는지를”을 “따라 이행 여부를 수입신고인 또는 관세청(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을 통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 수입 축산물 처리계획서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청장은 제7조의2에 따른 현장검사 결과 전량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 축산물의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는 5회 연속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해외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 축산물의 수입자, 제품명, 해외작업장, 부적합 내용, 부적합 판정일, 수출위생증명서 번호 등을 수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수출국 정부는 해당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수출국 정부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별표6 제6호에 따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작업장의 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의3(전문가 자문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해제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제1항 본문 중 “처리하여야 한다”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원  
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축산물이 정  
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에 해당될 경우 그 검사를 우선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정밀검사 항목에 관한 정보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신고 및 검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수입신고  
및 검사 등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u></p>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u>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u>」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부터 제34조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검사 업무를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u>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u>”이라 함은 식육·원유·식용란은 생산국·품목·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li> </ol>	<p style="text-align: center;"><u>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u></p> <p>제1조(목적)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p> <p>----- 업무를 수행하여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p> <p>제2조(정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이라 함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0 제4호마목을 말한다.</li> </ol>

수입된 것을, 그 외의 축산물  
은 생산국·해외작업장(제조  
·가공장)·제품명·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  
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을 말한다.

3. ~ 5. (생 략)

제3조(수입 축산물의 신고확인 및  
검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 제21조 및 「수입식  
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  
27조부터 제30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수입 축산물의 신고 내용  
을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 수입신고의 처리)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입고사실 및  
한글표시사항 확인은 전화, 모  
사전송(FAX), 서류 등으로 확  
인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  
착예정일 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수입신고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수입 축산물의 신고확인 및  
검사) -----  
-----  
----- 시행규칙  
-----  
-----  
-----  
-----  
-----  
-----  
-----  
-----

제27조-----  
-----  
-----  
-----  
-----  
-----  
-----  
-----  
-----

제4조(사전 수입신고의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입고사실 -----  
-----  
-----  
-----  
-----  
-----  
-----  
-----  
-----





수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거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에 따라 축산물운반업 영업의 신고를 한 자를 통해 송부할 수 있다.

④ 검체를 접수받은 해당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은 동봉된 검체 인계·인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체를 접수한다.

제11조(조건부 수입 검사 등) ①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우선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신고대상 수입

사기관의 관계인이 운반

<삭 제>

제11조(조건부 수입 검사 등) ①

1. -----

<단서 삭제>

축산물로서 시행규칙 제31조 제5항 각 호(제2호의 경우 포장 파손 등에 따라 단순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 축산물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입 축산물은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2. (생략)

②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 받은 지방청장은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수리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일 이내에 조건부 신고수리된 해당 축산물의 입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통보받은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고 후 2일 이내에 조건부 신고수리된 해당 축산물의 입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고가 완료되기 이전에 적합 판정된 경우에는 입고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16조(부적합 수입 축산물 등의 처리) ① 지방청장은 수입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부적합 통보서를 수입신고인 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지방청장은 부적합된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 당해 수입신고인에게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부적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 수입 축산물 처리계획서를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부적합된 수입 축산물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부적합 수입 축산물 처리계획서에 따라 이행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최종처리 결과를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부적합 수입 축산물 등의 처리) ① -----  
-----  
-----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 수입 축산물 처리계획서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  
-----  
----- 따른 이행 여부를 수입신고인 또는 관세청(수입화물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⑤ ~ ⑦ (생 략)

<신 설>

통관진행정보)을 통하여 -----  
-----.

⑤ 지방청장은 제7조의2에 따른  
현장검사 결과 전량 부적합 처  
분을 받은 수입 축산물의 동일  
사 동일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  
는 5회 연속으로 현장검사를 실  
시할 수 있다.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제16조의2(해외작업장에 대한 시  
정조치 절차 등) 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  
청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 축산물의 수입자, 제  
품명, 해외작업장, 부적합 내용,  
부적합 판정일, 수출위생증명서  
번호 등을 수출국 정부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수출국 정부는 해당 해외  
작업장에 대하여 그 원인을 조  
사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  
행하여야 한다

③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수출국 정부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별표 6 제6호에 따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작업장의 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의3(전문가 자문 등) 식품

<신 설>

제20조(행정사항 등) ① 지방청장은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수입 축산물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 순서를 이유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의 발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입 중단 조치 해제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행정사항 등) ① -----

-----  
 -----  
 --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축산물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검사에 해당될 경우 그 검사를 우선 실시할 수 있다. ---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각호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  
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2. (생략)

-----  
-----  
-----.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정밀검사  
항목에 관한 정보

3. (현행 제2호와 같음)